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8482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이연희 · 박지원 · 박정현  
임미애 · 김정호 · 김남희  
박용갑 · 염태영 · 손명수  
박홍배 · 문진석 · 복기왕  
한민수 · 이광희 · 김기표  
이춘석 · 이정문 · 박상혁  
안태준 의원(19인)

제안이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

존의 실증특례 제도와의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제도 도입 및 절차 마련(안 제2조제9호, 제14조제5항 및 제14조의2 신설)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함.

나.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제6항, 제14조의2제6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

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시허가 취소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1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는 경우와 부가조건 및 심사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이 정비되었으나 지체 없이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시허가 심의·의결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1항)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마.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2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및 임시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바.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임시허가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마련 (안 제27조, 제29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부가조건 미준수, 책임보험 미가입, 임시허가 부여가 취소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시허가”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제6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본문 및 제11항(중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4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 및 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2조제6항”을 각각 “제1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8항”을 “제12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2조제8항”을 “제12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

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제14조의2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임시허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임시허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5. 그 밖에 임시허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4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 및 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 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그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⑭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

행 전이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임시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14조의2제15항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증특례”를 각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모빌리티혁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4.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등이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4조의3(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에 따른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

제29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9항”을 “제12조제10항 또는 제14조의2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 및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

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lt;신설&gt;</u></p> | <p>제2조(정의) -----<br/>-----</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임시허가”란 모빌리티 수단 · 기반시설 ·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u></p> |
| <p>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⑤ (생략)</p> <p><u>&lt;신설&gt;</u></p>                     | <p>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 기반시설 · 서비스 및 기술의 내용 · 방식 · 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u></p>  |

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4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 및 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

⑦ ----- 제5항 및 제6항제2호-----

-----  
-----  
-----.

⑧ ----- 제7항-----

-----  
-----  
-----  
-----



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  
-----  
-----  
-----  
-----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⑬ ----- 제12항 -----  
-----  
-----  
-----  
-----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  
제12조제7항-----  
-----  
-----

② -----  
----- 제12조제7항 -----  
-----  
-----  
-----  
-----  
-----

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생략)

⑤ ~ ⑦ (생략)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8항 -----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제12조제9항 -----  
-----  
-----  
-----  
-----.

② ~ ④ (생략)

<신설>

⑤ 제1항 및 제1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 ⑦ (생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제14조의2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 제12조제9항-----  
-----  
-----  
-----  
-----  
-----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  
-----  
-----  
----- 제8항-----  
-----  
-----

⑩ ----- 제9항-----  
-----  
-----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  
제14조의2(임시허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  
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  
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임시허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처리

5. 그 밖에 임시허가 부여에 필  
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모  
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  
허가를 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  
술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

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4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 및 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부 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

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그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⑭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임시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실증특례의 부여에 관한 사항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14조의2제15항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  
 -----

1.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  
 -----

2.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⑤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⑥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제24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등이 규제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4조의3(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에 따른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

제29조(과태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2. 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자는 제외한다)

제29조(과태료) ① -----  
-----  
-----

1.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 제5항 -----  
-----

2. 제12조제10항 또는 제14조의2제11항 -----  
-----  
-----

|  |  |
|--|--|
| <p>3. (생략)<br/><u>&lt;신설&gt;</u></p> <p>4. (생략)<br/>② (생략)</p> | <p>--</p> <p>3. (현행과 같음)</p> <p>4. <u>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br/>임시허가의 부여가 취소된 모<br/>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br/>스 및 기술의 판매·이용 또<br/>는 제공 등을 한 자</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br/>② (현행과 같음)</p> |
|--|--|